

사 생 수 칙

제1조 (목적) 이 수칙은 사생이 입사기간 중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실 배정) 사실 배정은 기숙사에서 정하며, 일단 배정된 사실은 사생들간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3조 (외부인의 제한) 사생은 외부인을 사내에 대동 입실할 수 없다.

제4조 (일과시간) 사생은 다음 각 호의 일과시간을 지켜야 하며, 사감은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고,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개방시간 : 05:00~24:00
2. 식사시간 : 평일 조식 08:00~09:00, 중식 11:00~13:00, 석식 17:30~18:30
토요일 브런치 09:30~11:00
공휴일, 일요일은 운영하지 않음

(인원점검 및 호실점검)

사감(운영실 근무자 포함)은 기숙사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반입금지 물품 점검 등), 시설물 점검, 청소상태 점검 등을 위하여 호실을 점검할 수 있다. 외부기숙사의 정기 호실 점검(라운딩)은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사생들은 호실 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응급조치가 요구되는 비상상황, 화재, 도난사고의 경우에는 사생의 부재중에도 호실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점검사실을 사후에 통보한다. 사전에 공지된 일괄적인 시설점검 및 수리 등의 경우에도 사생이 재실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재중 입실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나 부득이하게 부재중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 사실을 사후에 즉시 통보한다. 만약 호실점검에 불응할 경우에는 벌점부여 및 필요에 따라 퇴사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5조 (사생자치위원회) 사생들간의 친목과 공동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생회를 둔다.

제6조 (식사절차) 사생은 다음 각 호의 식사절차를 지켜야 한다.

1. 식사는 식당 내에서 취식하여야 한다.
2. 환자의 식사는 관리자의 승인 하에 침실로 운반할 수 있다.
3. 식당 출입시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식사예절을 지켜야 한다.

제7조 (공고 및 게시)

1. 사생은 공고 및 게시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2. 모든 공고 및 게시물은 게시 후 48시간이 경과하면 모든 사생에게 주지된 것으로 간주하며, 미숙독으로 일어나는 문제는 사생이 책임진다.
3. 사생이 사내에 게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게시하여야 하며, 지정된 게시판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8조 (방문자) 방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방문자는 운영실 근무자의 허락을 받은 후 방문한다.
2. 사생 방문은 1층 로비에서 해야 한다. 다만, 운영실 근무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 (외박신고) 사생은 귀향 또는 외박 등으로 사생실에 숙박하지 않을 경우 운영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통신) 사내에서의 통신은 다음과 같이 이용한다.

1. 전화 이용
사생실내에서의 통화는 가급적 짧게 하도록 한다.
2. 우편물 수취
등기나 소포는 1층 운영실에서 본인임을 확인 후 수령한다.

제11조 (화기 및 청소책임) 사생은 각자 사생실의 화기 단속과 청소의 책임을 진다.

제12조 (세탁) 사생은 지정된 장소에서 세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변상) 사생이 시설물이나 기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태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기숙사비의 계산)

1. 사생이 중도에 입사 시 관리비 및 식비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정산한다.

- ① 성미료
- 관리비

개강일로부터 1개월 이 내	전액
개강일로부터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전액의 3/4
개강일로부터 2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전액의 2/4
개강일로부터 3개월 초과 4개월 이내	전액의 1/4

- 식비: 식권 자율 구입

- ② 외부기숙사
- 관리비

개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액
개강일로부터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전액의 5/6
개강일로부터 2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전액의 4/6
개강일로부터 3개월 초과 4개월 이내	전액의 3/6
개강일로부터 4개월 초과 5개월 이내	전액의 2/6
개강일로부터 5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전액의 1/6

- 식비: 식권 자율 구입

2. 사생의 중도 퇴사시 기숙사비 반환은 공식 입사일 1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하며, 공식 입사일 이후부터는 납부된 기숙사비에서 15만원을 공제한 후 잔여기간에 대해 환불한다. 단 13주차 이후 퇴사 시 환불 금액은 없다.

3. 사생의 강제퇴사 시 기숙사비 반환은 공식 입사일로부터 13주차까지는 납부된 기숙사비에서 15만원을 공제한 후 잔여기간 환불금액의 70%를 환불한다. 단, 13주차 이후 강제퇴사 시 환불금액이 없으며, 향후 재입사가 불가하다.

제15조 (벌칙) 사생은 벌점을 받은 사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 근거는 벌점 기준표와 같다.

1. 기숙사 재사기간 중 강제퇴사 및 벌점을 부과 받은 사생은 사생 선발 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 경고 처분
 - 가) 벌점이 17점인 경우
 - 나) 1회 범칙행위라도 그 벌점이 17점 이상에 해당 될 경우

제16조 (강제퇴사 처분) 사생은 사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강제 퇴사 조치한다.

1. 벌점 25점 이상인 경우
2. 경고처분 후 벌점 8점 이상을 추가하였을 경우
3. 사내에서 절도, 도박, 음주, 흡연, 폭행 행위
4. 전열기구(다리미, 전기밥솥, 전기장판, 전기오븐 등)를 별도로 사용하는 경우
5. 외부인을 사내에 숙식시키는 행위

제17조 (중도퇴사 절차) 사생이 자퇴, 휴학,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퇴사원 및 퇴사사유서를 퇴사 희망일 10일 전에 사감에게 제출하고 소정의 퇴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퇴사 절차(호실, 비품점검, 정산 등)완료 후 정산금을 반환한다.

제18조 기숙사에 놓고 간 퇴사 학생의 개인물품에 대하여 기숙사는 소유자인 학생의 의사를 확인 후 폐기 또는 임시 보관한다.

부칙

(시행일) 이 수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12.31

(시행일) 이 수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7.04.10

(시행일) 이 수칙은 2017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2학기 식당운영 중단으로 위 수칙 중 식사 및 식당 관련 사항은 기숙사 운영위원회를 거쳐 조정될 예정입니다.